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개정안

(이경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10월 1일

발 의 자 : 이 경 선 의원

찬 성 자 : 장숙이, 황춘하, 이진삼
김혜미, 박경희, 김순길
윤선경, 서호성 의원
(8인)

1. 제안이유

의원의 청가에 관하여 5일을 초과하여 청가를 얻고자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절차로서, 일수와 상관없이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의원의 청가를 일수에 상관없이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함.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개정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청가의 허가)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청가의 허가) 의원의 청가는 <u>5</u> <u>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, 5</u> <u>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</u> <u>허가한다.</u></p>	<p>제3조(청가의 허가) ----- <u>의</u> <u>장이 허가한다.</u></p>